

#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3년 6월 20일  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4. 14(월) 평창군수(민원봉사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6. 20(금)
- 다. 상정일자 :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3. 6. 20)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일래)

### 가. 제안이유

- 인감업무와 관련한 각종 배상사고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보상하여 안정적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읍·면·출장소 인감관련업무 직원의 인감사고 피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·관리등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평창군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.

○ 본 조례안이 제정되므로 인감발급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리라 생각됩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**

**5. 토 론 요 지 : 없음.**

**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.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**

**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음.**

붙 임 :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협 · 공제등가입조례안 1부.